#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(황선화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556

발의연월일: 2021. 3.

발 의 자: 황선화 의원

찬 성 자: 이민옥 의원, 남연희 의원,

양옥희 의원, 김현주 의원,

오천수 의원, 은복실 의원,

김종곤 의원, 임종숙 의원,

민운기 의원

#### 1. 제안이유

코로나19로 인한 배달과 온라인 쇼핑의 확산 등으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 응하고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, 교육 과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원낭비의 방지에 이바지하고 지역 사회의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·제공의 제한 등(안 제5조)
- 다.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등(안 제6조, 제7조 )
- 라. 실태조사(안 제8조)
- 마. 교육과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, 제10조)

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협조부서: 청소행정과

다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라. 입법예고(2021. 4. 2. ~ 4. 7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 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,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  - 1. "1회용품"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, 접시, 용기, 나무젓가락 등으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  - 2. "다회용품"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.
  - 3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   - 가.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
    - 나.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
    - 다. 「지방공기업법」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"구"라 한다)가 설립한 공단
    - 라.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
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
  - 2.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
  - 3.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 - 4.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
  -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·제공 제한 등)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·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.
  - 1.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·단체가 주최, 주관하는 행사
  - 2.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
  - ④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

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
- 제6조(자발적 협약의 체결)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등과 협약(이하 "자발적 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- 제7조(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(이하 "우수업소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1.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
  - 2.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
  - 3.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

- 2.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,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④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9조(교육)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1.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
  - 2.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
  - 3. 우수업소 및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견학
  - 4.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0조(지원 및 홍보 등)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지원 및 홍보사업

- 2. 각종 축제 및 행사, 구정 홍보물 등 온·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 사업
- 3. 다회용품 물품공유소 이용 활성화 지원 및 홍보사업
- 4.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9조와 제 10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2조(표창)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· 단체 및 개인에게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< 관계법령>

# □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~ 14. (생략)
- 15. "1회용품"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16. ~ 17. (생략)

# □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5조(1회용품) 법 제2조제1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
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09.4.6>

#### <u>1회용품</u>(제5조 관련)

- 1. 1회용 컵 · 접시 · 용기(종이, 금속박,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)
- 2. 1회용 나무젓가락
- 3. 이쑤시개(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)
- 4. 1회용 수저 · 포크 · 나이프
- 5. 1회용 광고선전물(신문·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 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)
- 6. 1회용 면도기·칫솔
- 7. 1회용 치약·샴푸·린스
- 8. 1회용 봉투·쇼핑백(환경부장관이 재질, 규격, 용도,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 시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9. 1회용 응원용품(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, 비닐방 석 등을 말한다)
- 10. 1회용 비닐식탁보(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)